CHOI HONG LEE & KANG LLP
Certified Public Accountants & Consultants

3435 Wilshire Blvd., Suite 480, Los Angeles, CA 90010 T: (213) 365-1700
1 Centerpointe Dr., Suite 350, La Palma, CA 90623 T: (714) 676-8100
3820 Del Amo Blvd., Suite 220, Torrance, CA 90503 T: (310) 542-6373
WWW.CHLKCPA.COM

2023 년 12월 29일

FORM 1099 에 대한 유의사항

사업주 (Business) 및 임대업주 (Landlord) 들이 Service Fee, Commission, Rent, Interest 등을 지급한 경우, 반드시 **Form 1099** 을 발행하여 이듬해 **1월 31일까지** Payee (수령인) 에게 보내고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. Material Supplier (재료 공급업체) 에게 지불한 내역은 제외됩니다.

Form 1099 을 발행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. 개인이나 회사에 Commission, Fee, Service Charge, Rent 등으로 지불한 금액이 연 최소 **$600** (per payee)인 경우
2. 정식 소매상 설립없이 개인에게 $5,000 이상의 소비재를 판매한 경우
3. Contractor 혹은 Subcontractor 에게 연 $600 (per payee) 이상 지불한 경우
4. Attorney에게 지불한 모든 비용 (Gross Proceeds) 이 $600 (per payee) 이상인 경우
5. Interest, Royalty, Dividend, Pension 등에 연 최소 **$10** 지불한 경우

연방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의 감사를 강조하고 있으며, 상기 내용으로 비용을 지출하신 경우 모든 수령자 (Corporation 포함) 로부터 Form W-9 을 받으셔야 합니다. 수령인이 Form W-9 작성을 거절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 금액의 **28%**를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시고, 공제한 금액은 **Form 945** (Annual Return of Withheld Federal Income Tax) 를 통해 보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. 2023년도 1099의 정부보고 마감일은 **2024년 1월 31일** 입니다.

Form 1099 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Form 에 대해 **$50 ~ $550** 만큼, 비용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. 또한 지불액을 Business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Form **W-9** 은 해당 비용을 **지불하실 때** 수령인으로부터 받으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2023년 비용 중 아직 Form W-9 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,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 저희 사무실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Form W-9 은 IRS Website 에서 Down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래의 링크를 사용하셔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
http://www.irs.gov/pub/irs-pdf/fw9.pdf

CHOI HONG LEE & KANG LLP
Certified Public Accountants & Consultants

3435 Wilshire Blvd., Suite 480, Los Angeles, CA 90010 T: (213) 365-1700
1 Centerpointe Dr., Suite 350, La Palma, CA 90623 T: (714) 676-8100
3820 Del Amo Blvd., Suite 220, Torrance, CA 90503 T: (310) 542-6373
WWW.CHLKCPA.COM

1099-K 감소된 신고 기준액이 2024년으로 연기됨

작년에 Venmo, PayPal, Amazon, Square, eBay, Esty 등과 같은 제3자 결제 네트워크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$60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개인, 파트너십, LLC 및 기업이 Form 1099-K를 받기 시작할 것임을 공지하였습니다. Form 1099-K는 지불카드 및 제 3자 네트워크 거래이며 수령 금액이 1년에 $6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자신과 IRS에 보고됩니다.

세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이 새로운 세금 신고 기준액인 $600은 원래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. 이는 2023년으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. 그러나 IRS는 온라인 판매자와 결제 처리업체들의 혼란을 우려해 다시 한 번 연기했습니다.

2023년에는 2024년 초에 1099-K를 전송하기 위한 기존 기준인 1) 총 결제금액 $20,000 이상, 그리고 2) 200건 이상의 거래, 위 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 1099-K가 발급됩니다.

IRS는 “새 조항의 복잡성, 영향을 받는 개별 납세자의 수,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리드타임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”을 고려하여 $600달러 보고 기준액을 시행하기 위한 단계적 도입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한도액을 $5,000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